



최근 우리나라도 우사 등 축사부근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소음·진동·먼지 등으로 인한 소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부쩍 늘고 있는 실정에 있다.

그러나 정작 이러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의 구비가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광경을 보아온 터라 감히 펜을 들어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저 한다.

또한 우리 소 사육농가중에서 젖소를 사육농가들은 검정기록이나 우유생산 및 번식관리를 포함한 자체 농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객관적인 자료 등이 준비되어 있으나,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에게서는 일부의 경우 그 정확한 개체기록이나 수정기록 등의 번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가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여 채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어 그 실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감히 지적을 해나갈까 한다.

그리고 최근의 환경분쟁에 있어서는 피해액이 1억원미만일 경우에는 각 도 지방환경분쟁위원회에서 처리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피해 축산농가에게는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.

따라서 최근 환경분쟁조정현황과 피해축산농가가 구비해야할 증거자료, 피해보상신청방법이나 요령 등을 소개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.



1. 환경분쟁조정현황

가.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(2004. 3.31현재)

(1) 피해원인별

구 분	계	소음·진동	대기오염	수질오염	해양오염	기타(토양오염 3, 추락 위험 1, 기름유출 1)
계(%)	1,082 (100)	924 (85)	98 (9)	47 (5)	8 (1)	5 (-)
'04. 3	66	65	1			
'03	292	264	19	8		1
'02	263	229	26	4		4
'01	121	103	11	7		
'00	60	49	7	4		
'99	79	67	8	4		
'98이전	201	147	26	20	8	

(2) 피해내용별

구 분	계	정신적 피해	건축물+ 정신적	축산물 피해	농작물 피해	건축물 피해	내륙수산 물 피해	해양수산 물 피해	기타 피해
계(%)	1,082 (100)	423 (39)	250 (23)	163 (15)	61 (6)	51 (5)	30 (3)	9 (1)	95 (8)
'04. 3	66	31	19	8					8
'03	292	149	58	18	9	12	5		41
'02	263	121	65	42	13	7	1		14
'01	121	36	33	26	8	2	5		11
'00	60	16	13	15	4	2	5		5
'99	79	19	22	23	6	4	2		3
'98이전	201	51	40	31	21	24	12	9	13

2. 피해농가 제출해야 할 자료

※ 신청인 제출자료사례(축산물 피해일 경우; 소음·진동 등)

가. 피해사진 및 주변환경사진

나. 연도별 축산물 관리대장

다. 축산물 구입 및 판매거래 명세표

라. 공인 기관의 병성감정 결과(성적서)

마. 사료 및 관리비용 자료

바. 동물사육장 평면도

사. 피해 현황자료

아. 기타 참고자료

- (1) 수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
- (2) 정액(난자)증명서 및 인공수정증명서
- (3) 읍 면 동장 발행의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
- (4) 한우개량단지의 경우 혈통등록우 관리카드
- (5) 육질저하피해의 경우는 OO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물등급판정사 발행의 육질판정 내역서
- (6) 도축검사 증명서
- (7) 젖소검정기록
- (8) OO축산업협동조합발행의 우유생산 및 집유내역
- (9) 평균지방율, 세균수 및 체세포수 등급내역, 체세포수 관리 통지서
- (10) 임상전문수의사의 번식검진내역, 번식성적관리 등

3. 피해농가의 피해보상신청방법 및 요령

가. 신청사건 처리 절차

- (1) 재정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사건을 담당할 심사관과 재정위원을 임명하여 알려드리고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문서로 제출 요구
- (2) 당사자(신청인, 피신청인)에게 사건담당 심사관, 재정위원 지명 알림 및 피신청인에게



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

- (3) 담당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의 현장조사 실시 (신청서 접수 후 한달 이내로 실시)
- (4) 당사자 출석요구서 발송
- (5) 회의 개최 및 당사자 심문
- (6) 담당심사관의 현지조사결과와 재정회의에서의 당사자 심문결과를 종합, 판단하여 피
해인정 여부와 배상 금액 결정
- (7) 재정문 송달
- (8)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재정문 수령 후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
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당사자간 합
의효력 발생
- (9) 가해자가 위 기간내 법원에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위원회 결정을 이행도 하지 않을 경
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이행 소송제기

나. 신청서 작성방법

(1) 신청서 구비서류

- (가) 신청서 정본 1부
- (나) 선정대표자 선정 및 선정 동의서 각 1부 (3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에만 필요)
 - ① 동의서는 개인별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지만,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친권자가
대신 날인 가능
 - ※ 신청인·대표선정동의 및 개인별 피해금액내역은 아래 작성예시에서와 같은 통합
서식으로 작성

(다) 증거 및 참고자료

〈재산피해의 경우〉

- ① 건물피해의 경우
 - ㉠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록부등본(피해자 소유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)
 - ㉡ 공사원가 계산서(피해가옥의 수리비용 견적서), 지적도 등 인과관계 규명 및 배상
액 산정 참고자료
- ② 축산물 피해의 경우
 - ㉠ 연도별 축산물관리대장 사본
 - ㉡ 축산물 구입 및 판매거래명세표

㉔ 공인기관의 병성감정 결과(성적서), 사료 및 관리비용 자료, 동물사육장 평면도 등 피해현황 자료

※ 공동자료: 피해사진 및 주변환경사진

다. 신청서 작성요령

● 신청인

피해를 입은 개인은 신청인의 이름, 전화번호,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상호를,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상의 상호를 기재하며, 별지에 신청인명단 작성한다.

● 선정대표자

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대표자(3인이하)를 선정하여 기재하고 별지에 대표자 선정 및 대표자 선정동의서(반드시 서명날인 또는 지장을 찍는다)를 작성한다.

● 피신청인

피해를 주는 회사등 본사 회사명, 대표자, 주소, 전화번호를 기재한다

● 오염 발생의 일시·장소

피해를 주는 공사장, 공장의 현지주소 및 현장 전화번호를 지역번호와 함께 기재한다

●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·장소

피해발생장소의 주소를 기재한다

●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

소음 등 주요 피해원인 및 대상을 기재하고 상세내역은 별지로 6하원칙에 의해 작성한다

● 재정을 구하는 피해액 및 그 산출근거

신청인별로 피해입은 금액과 산출근거를 별지에 상세히 작성한다

● 분쟁의 경과

분쟁사유가 발생하게 된 시점부터 유관기관, 피신청인 등과 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의 기간동안 이루어진 분쟁내용을 별지에 상세히 작성한다.

이상과 같이 필자가 전국 각지의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·진동·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분쟁현장에서 소 피해농가들을 현지조사 하면서 느낀 바를 피력을 하였으며, 중앙과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현황과 피해축산농가가 구비해야할 증거자료, 피해보상신청방법이나 요령 등을 소개하였으며, 이 자료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.